

대법원 2010. 2. 11 선고 2009다8869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0. 2. 11 선고 2009다88693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9. 9. 30 선고 2009나1726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14 선고 2008가단98479 판결

전문

원고,상고인 용○시

대표자 시장 서○○

피고,피상고인 한국○○관리공사

서울 강남구 ○○

대표자 사장 이○○

법률상 대리인 송○○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

담당변호사 천●현,조▼상,김×호,손▽표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.9.30.선고 2009나17266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0.2.11.

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